

##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##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2년 2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1992년 2월 11일

#### 3. 개정사유

학교신설, 소규모학교 등, 폐합으로 인한 본교폐지, 분교장격하, 분교장폐지, 행정구역 변경, 학과 개편등으로 충청북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골자

가. 학교신설(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6교)

나. 본교폐지(충주-복성국민학교)

다. 분교장격하 학교(수룡국민학교와 14교)

라. 분교장폐지 학교(복일국민학교 청예원분교장와 19교)

마.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학교(증평여자고등학교와 1교)

바. 위치이전 학교(목도중학교)

사. 행정구역 변경지역 학교(추풍령국민학교와 4교)

아.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(봉정국민학교)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농촌지역의 이동현상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따른  
교육인구의 이동과 지역명칭의 변경등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
가. 영동군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(91. 7. 5 제1332호)로 황금면이 추  
종령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고,

나.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한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(91. 12. 31 제  
1301호)에 따른 주소 변경

다. 택지개발지구 지적 정리에 따른 지번 부여로 주소가 변경되었음

라.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설계획안 및 본교폐지, 분교장폐지, 분교장  
격하 기준(대통령령)에 의하고,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내실  
화 도모,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 
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

-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.  
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  
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의하실  
위원이 제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- 김재근위원 위원장!
- 위원장 한장훈 예, 말씀하십시오.

○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 
산남국민학교, 율량국민학교, 가경국  
민학교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 
92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것으로  
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 
해주시고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  
준을 좀 밝혀 주시고 그 통폐합 기  
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어떻게  
만들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  
니다.